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처분에 대한 재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386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은호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처분에 대한 쟁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3

I. 개요

1.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386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광상언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6. 1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2항은 급여비용의 심사·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규정하며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30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의 심판청구 절차 역시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음.

즉,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제6항 신설 및 제30조의2제3항·제4항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처분에 대한 쟁송수단 안내 의무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u>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심판청구)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제5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신
청인에게 심판청구 또는 행정
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
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
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심판청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제6항-----

-----.

제30조의2(심판청구)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하
여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 내
용을 서면으로 그 이유를 구체
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결정을 통지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행정소송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이미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 -----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0조¹⁾에 따르면,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장기관,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시행령 제17조²⁾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은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 의료급여기관 또는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기관이 제11조의3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이의신청의 결정 및 통지) ① 시장·군수·구청장 및 법 제9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및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이의신청결정서의 정본을 송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심사 관련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

연 도		접수현황	처 리 결 과			
			계	인 정	불인정	불인정률
2023년	건수	38,122	41,850	27,835	14,015	33.5
	금액	9,673	8,844	3,211	5,633	63.7
2024년	건수	24,597	31,067	15,729	15,338	49.4
	금액	11,822	11,859	3,861	7,998	67.4
2025년	건수	29,708	31,178	9,358	21,820	70.0
	금액	18,553	19,049	5,417	13,632	71.6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 (2026.7.20.기준)

□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여부와 상관 없이 「행정심판법」 3)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 4)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⁵⁾

3)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의료급여법」

제30조의2(심판청구) ①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 및 제기방법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소득·재산·가구 구성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급여인 만큼, 조사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법령 적용에 대한 판단 차이로 인해 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수급권자 등이 적절한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결과와 함께 이후 이용 가능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후속 쟁송수단⁶⁾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구제 수단 및 그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고, 특히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급여의 경우 단순한 처분의 적법성 판단을 넘어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⁷⁾은 행정청⁸⁾이 이의신청 결과를

6) 「사회보장기본법」

제39조(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행정기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행정기본법」

통지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그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제도에서도 지침 등을 통해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후속 재송수단과 제기기간 등을 함께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련 업무에서도 이러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및 재송수단 안내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 명확히 규정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행정기본법」을 통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다시 규정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개별법에 별도 규정을 둘 실익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통지받고 쟁송수단 등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해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쟁송수단 안내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법제처)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①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향후 「행정기본법」이 개정될 경우 개별법과 「행정기본법」 간의 내용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어 그때마다 매번 추가로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이의신청인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입법목적은 달성하는 방법으로 기존 입법례⁹⁾와 같이 「행정기본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연결 규정을 두는 방안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면’으로 규정할 경우, 실무상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전자문서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상 분쟁 발생 우려가 있고, 행정절차법, 국민건강보험법, 전자정부법 등의 조문과 불일치하므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7

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⑦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부과금 또는 가산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